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연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1.

발 의 자 : 정연욱 · 이종배 · 한지아
박정하 · 진종오 · 조경태
박정훈 · 서명옥 · 김재섭
이헌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,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,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이나 등록 요건의 유지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은 부재하고,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더라도 행정제재와 연계하는 근거가 미흡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, 기획

업자에게 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하며, 문화체육관광
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반의 투명
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, 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
(안 제27조제3호 및 제31조의2 신설).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3호 중 “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조세범 처벌법」”으로 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보의 종합관리)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영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영업 현황, 행정제재 처분 및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·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

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	제27조(결격사유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이 법, 「형법」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거나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조세범 처벌법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4. 5. (생 략)	4.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31조의2(대중문화예술기획업

정보의 종합관리) ① 대중문화
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
기획업의 등록 및 영업 현황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
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
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영
업 현황, 행정제재 처분 및 그
밖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
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
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
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
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
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하여
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
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
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
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
·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자료
제출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
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
로 정한다.